

협 조 전

안전보건팀 / 담당자 : 유장열 이사
TEL 031- 645-2251 / FAX (031) 758-0537

문서번호 : 안전보건팀 22 - 32호

시행일자 : 2022. 12. 27

수 신 : 현장소장

참 조 : 안전관리자 /관리감독자

제 목 : 이동식사다리(A형 사다리)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철저

1. 전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
2. 이동식 사다리는 설치와 사용의 간편함으로 건설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작업 도구이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추락 사고인데 이는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며 추락하여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3. 이에 각 현장은 사다리 사용 작업 시 올바른 사용방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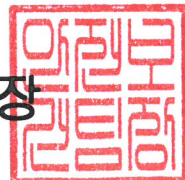
- 아 래 -

【사다리 작업 안전수칙】

- 기계나 적재물, 목재사다리, 나무상자 등을 사다리 대신 사용 금지
- 안전모 필히 착용
- 1.2M 이상 사다리는 2인 1조 작업
- 2M이상 사다리는 안전대 착용
- 3.5M 이상 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
- 각부에는 미끄럼방지장치(아웃스트리거)를 부착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
-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- 수시로 사다리 부식 및 손상 여부 점검

붙 임 :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. 끝.

안 전 보 건 팀 장



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!

사다리 사용이
불가피한
경작업에
한하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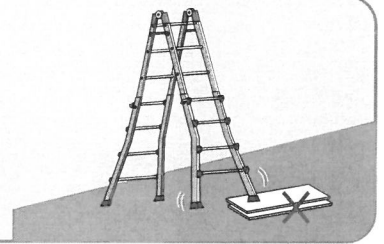
▣ 경작업, 고소작업대·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
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
* 경작업 :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
전구교체 작업, 전기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



평탄·견고한
바닥에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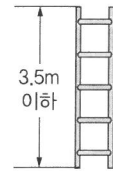
▣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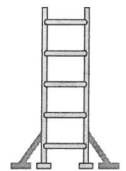
3.5m 이하의
A형 사다리를
사용하여

▣ 최대길이 3.5m 이하 A형 사다리(조경용 포함)
에서만 작업

* 보통(일자형)사다리, 신축형(연장형)사다리, 일자형으로
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(A형)에서는 작업금지



적정길이의
사다리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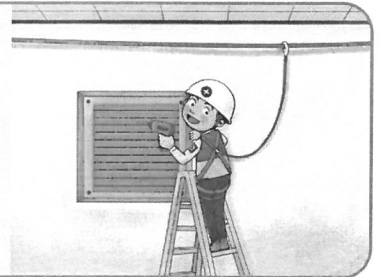


넘어짐 방지
조치(견고)

보호구를 반드시
착용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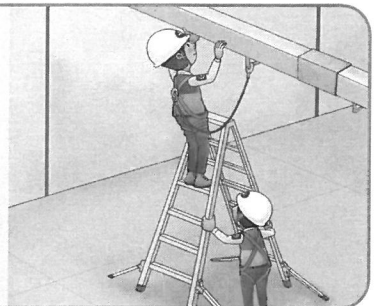
▣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,
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

* 작업높이 :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



2인 1조로
작업하세요!

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
▣ 1.2m 이상 ~2m 미만 : 2인 1조 작업,
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
▣ 2m 이상 ~ 3.5m 이하 : 2인 1조 작업,
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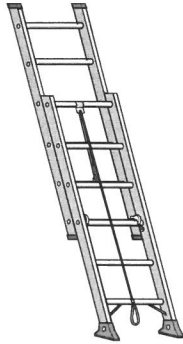
※ 본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→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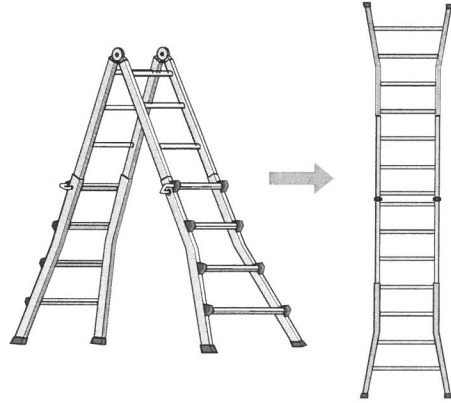
보통(일자형) 사다리



신축형(연장형) 사다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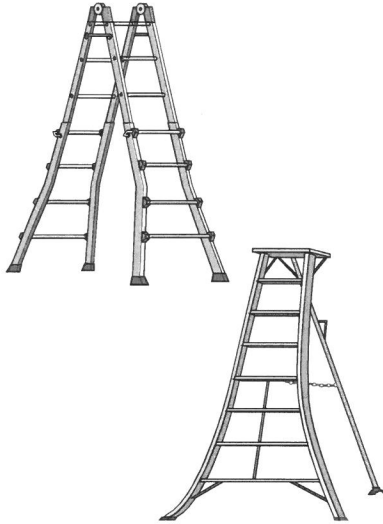
발붙임 사다리(A형)
(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)



안전작업 지침

- ▣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(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)
- ▣ 반드시 안전모 착용
- ※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 준수

발붙임 사다리(A형, 조경용)



작업 높이 (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)	안전작업 지침
1.2m미만	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
1.2m이상 ~ 2m미만	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 ○ 2인 1조 작업 ○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
2m이상 ~ 3.5m이하	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 ○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○ 최상부 발판 +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
3.5m초과	○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

공통사항

- ▣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- ▣ 경작업*, 고소작업대·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- *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, 전기·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
- ※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 준수